

해양수산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
|------------------|------------------------|
| 기 관 명<br>(부 서 명) | 국무위원 ○○○<br>(○○○○○○장관) |
| 연 월 일            | 2021. . .              |

법제처 심사 전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 채용시험 지원자에 불필요한 제출서류 요구로 인한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서류 간소화 하여 현행 채용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공동이용”을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2조 중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경찰교육기관의 장”을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3통”을 “1통”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시원서에”를 “응시원서를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해야하며,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으로, “첨부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을 “제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행정정보”로 하

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않는 경우에는”을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로 한다.

1. 신원진술서 1통

2.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4. 자격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된다)

5. 경력증명에 관한 서류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된다)

별표 5 비고 제1호 중 “팔굽혀펴기 중”을 “팔굽혀펴기 및 좌우악력 중”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0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①<br>(생략)                                                                                                                                                                               | 제20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①<br>(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u>공동이용</u> 을 통해 경찰공무원의 병적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② -----<br>-----<br>-----<br>-----<br>-----<br><u>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u> -----<br>-----<br>-----<br>----. -----<br>-----<br>-----. |
| ③·④ (생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제22조(교육훈련성적의 통보) <u>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경찰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서식에 교육훈련을</u>                                               | 제22조(교육훈련성적의 통보) <u>해양경찰교육원장</u> -----<br>-----<br>-----<br>-----<br>-----<br>-----<br>-----<br>-----<br>-----                             |

이수한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을 기재하여 해당 경찰공무  
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의 장  
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7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쟁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  
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  
험(이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  
경쟁선발시험”이라 한다)에 응  
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  
이 정하는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험  
실시권자(이하 “시험실시권자”  
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  
제26조제1항제4호(영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제4차시험(순경 공  
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제3차시  
험을 말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신원진술서 3통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제27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①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designed to help children learn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1. ----- 1통

2. 지문대조표 1통

3. ~ 6. (생략)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경력  
경쟁채용시험등(이하 “경력경  
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  
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  
이 정하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  
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원진술서 3통(경정 이상은  
4통)

2. 지문대조표 1통

3. (생략)

4. 자격증명서 1통(법 제10조제  
3항제2호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경력증명서 1통

6. ~ 8.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응시

2.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만 해당된다)

3. ~ 6. (현행과 같음)

② -----  
-----  
-----  
-----  
----- 응시원서를 시험실시  
권자에게 제출해야하며, 면접시  
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  
제출-----.

1. 신원진술서 1통

2.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만 해당된다)

3. (현행과 같음)

4. 자격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된다)

5. 경력증명에 관한 서류 1통(응  
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  
된다)

6. ~ 8. (현행과 같음)

③ -----

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 2. (생략)

④ (생략)

-- 행정정보

----- 않거나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  
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  
--.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